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정	1988. 2. 29.	이사결재	국증 1011-	137
개정	1992. 10. 17.	부장결재	국증 8011-	699
	1993. 6. 12.	부장결재	국증 8011-	429
	1995. 4. 13.	부장결재	국증 8011-	175
	1996. 1. 29.	부장결재	국증 8011-	62
	1997. 12. 19.	부장결재	국증 8011-	937
	1999. 5. 24.	부장결재	국증 8010-	434
	2001. 3. 23.	실장결재	국증 8010-	194
	2002. 10. 14.	실장결재	국증 8011-	666
	2003. 11. 21.	실장결재	국증 8011-	728
	2006. 5. 29.	실장결재	증권팀	- 683
	2007. 5. 3.	실장결재	증권팀	- 595
	2008. 4. 10.	실장결재	증권팀	- 502
	2011. 2. 25.	실장결재	증권팀	- 275
	2013. 5. 14.	실장결재	증권팀	- 790
	2014. 12. 22.	실장결재	증권팀	-1760
	2015. 4. 17.	실장결재	증권팀	- 583
	2017. 3. 31.	실장결재	증권팀	- 407
	2017. 5. 10.	실장결재	증권팀	- 548
	2023. 3. 8.	실장결재	증권팀	- 428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된 수입인지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무취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을 말한다.
2. “통할점”이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및 지역본부를 말한다.
3. “판매기관”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우체국을 말한다.
4. “할인판매금융기관”이란 시행령 제3조제3호의 수입인지 판매기관 중 우체국을 제외한 판매기관을 말한다.
5. “결제모점”이란 통할점 소재지 관할 판매기관에 수입인지를 공급하고 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을 통할점에 납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은 해당 기관의 중앙회를 결제모점으로 하고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결제모점으로 하되, 우체국의 통할점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장이 정한다.

제3조(수입인지 제조 요청) 본부는 다음 연도 수입인지 공급계획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조를 요청한다.

제4조(수입인지의 공급) ① 통할점이 결제모점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결제모점 관할 판매기관의 권종별 직전 3개월 월평균 판매량에 6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전월 말 재고량을 뺀 수량을 전지(全紙) 단위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할점은 재고량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량을 조정하거나 특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② 본부는 판매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판매기관의 본지점 전체 필요량을 한꺼번에 결제모점에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수입인지 공급신청 등) ① 수입인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결제모점은 관할 통할점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할인판매금융기관에 각각 인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제모점은 통할점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을 때 각각 수입인지 공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수입인지 청구서·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해당 통할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할인판매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으려면 수입인지 할인판매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각 서식의 제출은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통지문으로 전송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청구하는 경우
2.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신청·청구하는 경우
3. 장애 발생 등으로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수입인지의 우선공급 등) ① 할인판매금융기관은 자체 판매보다 판매인에 대한 공급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지의 규격 또는 모양이 변경된 경우 판매기관과 판매인은 변경 전 수입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거래대리인 등록 등) ① 통할점은 결제모점이 수입인지 거래대리인(이하 “거래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거래대리인(지정, 지정취소)통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 해당 거래대리인의 명세를 한국은행 회계시스템 등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수입인지 거래를 할 때마다 제5조제2항의 수입인지 청구서·송부서에 기재된 거래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거래대리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받아 거래대리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창구 설치 및 표시) 판매기관은 수입인지 판매창구를 설치하고 “수입인지” 창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수입금의 납입) ① 결제모점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매월 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을 수입인지 판매보고 및 대금납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달 10일까지 통할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월의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은 통할점이 해당 결제모점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차기하여 지급받는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 예탁금계정에서 차기하여 지급받는다.

③ 통할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입금을 지급받은 그 날 본부에 송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제출은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판매계약의 체결) 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이 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판매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위하여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와 수입인지 판매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 2부를 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할인판매금융기관은 이를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할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할점은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구비되는 수입인지 판매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알아볼 수 없도록 지운 후 접수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이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할점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입인지 판매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이 중 1부는 통할점이 보관하고, 1부는 할인판매금융기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1조(판매계약의 해지) ① 통할점은 판매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판매인에게 계약 미이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판매인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② 통할점은 매년 상반기 중 제17조제1항의 판매인별 할인판매보고서상 최근 1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판매인을 대상으로 판매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판매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할인판매금융기관을 거쳐 통할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할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1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서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각각 이를 판매인 및 할인판매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계약 내용의 변경) ① 판매인은 주소, 성명[개명(改名)한 경우를 말한다], 판매소 설치장소 또는 할인판매금융기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인판매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보서를 통할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별지 제6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할점은 제1항의 판매계약 변경통보 내용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판매인 및 할인판매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소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 위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할인판매금융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할인판매금융기관이 판매인의 연중 할인판매명세장 사본 1부를 변경 후 할인판매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인지의 보관) ① 수입인지는 발매용수입인지, 손상수입인지 및 보기수입인지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발매용수입인지는 권종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지는 권종별 전지 100장씩을 띠지로 가로·세로로 묶어 작은묶음으로 하고 작은묶음 5개를 큰묶음으로 한다.

제14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반납) ① 판매기관은 보유 수입인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훼손된 것을 제외한 손상수입인지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으로부터 교환 청구된 손상수입인지를 결제모점을 거쳐 통할점에 교환을 청구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② 통할점이 수입인지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기관은 수입인지를 결제모점을 거쳐 통할점에 교환을 청구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③ 결제모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매기관으로부터 회수된 수입인지를 통할점에 교환을 청구하거나 반납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입인지 송부서·영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인지의 폐기) ① 통할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손상수입인지를 감사실 검사역 입회하에 태우기, 잘게 자르기 또는 녹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시 처분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은 원활한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특정 종류의 수입인지를 폐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할점에서의 폐기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과부족처리) ① 판매기관은 수입인지가 남거나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그 경위를 통할점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할점은 이를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족분은 법 제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자가 변상한 것은 수입인지 판매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남는 분은 인수한 것으로 계산하고 그 내역을 수입인지 출납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할인판매금융기관 본점은 판매인의 연간 수입인지 판매실적을 판매인별 할인판매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기관 본점은 연도말 현재의 해당 판매기관 전체의 수입인지 출납·보관자 현황을 집계하여 수입인지 출납·보관자 현황 일람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수입인지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수입인지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 관련 장부에 대한 기록은 전산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및 해지대장(통할점용)
2. 수입인지출납장(통할점, 판매기관용)
3. 판매기관별 공급 및 판매명세장(통할점, 결제모점용)

4. 할인판매명세장(할인판매금융기관용)
5. 보기수입인지 관리대장(통할점, 판매기관용)

제19조(전표대용) 수입인지 거래에 따른 전표는 수입인지 청구서, 수입인지 송부서 및 수입인지 할인판매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상위직급자의 거래승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담당자의 상위직급자가 미리 거래승인을 하여야 한다.

1. 본부와 지역본부간의 수입인지 현·수송 거래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 공급 및 회수 거래
3.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수입인지 인수거래
4. 수입인지 폐기 및 과목변경 거래
5. 판매기관으로부터의 판매수입금 회수 및 정부 앞 세입금 납입
6. 수입인지 관련 거래의 취소

제21조(준용규정) 이 절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무취급 절차는 「국채사무취급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1988. 2. 29〉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88. 3. 30.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절차 시행과 동시에 수입인지에관한사무취급요강은 폐지한다.
- ③ (경과규정) 이 절차 시행일 이전의 수입인지사무는 이 절차에 의하여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10. 17〉

이 절차는 199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12〉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3. 6. 22.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한 판매보고서와 제10조에 의한 판매인별 할인판매보고서는 1993년 7월 10일 제출분에 한하여 이 절차 개정 전·후로 각각 구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4. 13〉

이 절차는 1995.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29〉

이 절차는 1996. 1.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19>

이 절차는 1998. 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24>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5. 24.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절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절차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3. 23>

- ① 이 절차는 2001. 4. 2.부터 시행한다.
- ② 통할점은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입인지 공급기준에 불구하고 2001. 6. 30. 까지 한시적으로 결제모점 관할 판매기관의 익월중 판매 예상량 범위내에서 수입인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2002. 10. 14>

이 절차는 2002.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1>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3. 11. 28.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절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절차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5. 29>

이 절차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

이 절차는 2007.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0>

이 절차는 2008.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

이 절차는 2011.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4>

이 절차는 2013. 5.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절차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30>

이 절차는 2015.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1>

이 절차는 2017. 3.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0>

이 절차는 2017. 5.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전에 종전 절차에 따라 처리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때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약인 또는 금융업무실장 인장이 찍힌 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 지 서 식

<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

별지 제1호 서식	인감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인지 공급신청서(가로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수입인지 청구서·송부서(가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인지 할인판매청구서
별지 제3-1호 서식	수입인지 거래대리인(지정, 지정취소)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인지 판매보고 및 대금납부서(가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별지 제7호 서식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수입인지 송부서·영수서(가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판매인별 할인판매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인지 출납·보관자 현황 일람표